



산림조합중앙회산림사업본부남부사업소



수 신 울진국유림관리소장
(경유)

제 목 2024년 간선임도 신설사업(기번3) 안전관리계획 승인신청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

1. 관련법률

- 가.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(산림사업의 안전관리)
- 나.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)

2. 위 법률에 의거 하여 「2024년 간선임도 신설사업(기번3/울진.울진.대흥.산65외2)」의 위험성평가를 완료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신청서 1부.
2. 위험성평가 결과 1부.
3. 위험성평가표 1부. 끝.

산림조합중앙회산림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



대리 유창엽 과장 도재철 팀장 우병로 소장 04/22 장진구

협조자

시행 산림사업본부남부사업소-695 (2024. 4. 22.) 접수 ()

우 36705 경북 안동시 대안로 197 /
전화 054-604-4211 /전송 054-854-5963 / mythh@naver.com / 공개

산주와 조합원이 행복할 때까지 SJ산림조합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.